

검 토 보 고 서

파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

□ 제정이유

대통령령인 법제업무운용규정 제 20조 2항에서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, 그동안 훈령에 의해 운영되고 있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함

□ 주요골자

- 공중위생, 환경보존등 주민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자치법규를 제·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입법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 대상을 정함(안 제2조)
- 입법예고사항중 당해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등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 제외대상을 정함.
(안 제3조)
- 입법예고기간은 20일이상을 원칙으로 하되, 긴급한 경우에는 기획실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)
- 입법예고에 따라 제출된 의견은 자치법규에 적극 반영하고, 그 처리과정 및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도록 함.
(안 제8조 및 제9조)

□ 검토의견

- 동 조례안은 자치법규안 제정시 미리 그 사항을 주민에게 알려 주민의 의견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.
- 그동안 자치법규안에 관한 입법예고는 훈령에 의해 운용되고 있었으나, 대통령령인 법제업무운용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음.
- 따라서 동 조례안은 법령적합성 및 내용적 타당성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됨.
- 다만,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에 대해 행정규칙에 불과한 훈령에 의해 규정하여 지금까지 운영한 것은 입법상 문제점으로 생각됨.